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1.~5.(생략) <신설> 6.~9.(생략) ②~④(생략)	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1.~5.(현행과 같음) <u>5의 2.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(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)</u> 6.~9.(현행과 같음) ②~④(현행과 같음)
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~⑤(생략)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⑦~⑩(생략)	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~⑤(현행과 같음)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(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)</u>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(<u>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</u>)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⑦~⑩(현행과 같음)
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수익자는 한국	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수익자는 한국

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 <u>수익증권통장거래 약관</u> ”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	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 <u>수익증권저축약관</u> ”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
<신 설>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6년 1월 20일부 터 시행한다.</u>